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2. 25.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 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038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됨에 따라, 지정 신청을 위한 절차와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경력있는 과정과 경력없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모집단위별로 교원확보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수업연한의 단축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요건은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업연한 단축이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까지만 가능하게 규정되어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기준(교원확보율)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위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2년 이상)에 대해서만 수업연한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대학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요건을 관련 분야 재직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업연한 단축을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까지 가능하게 변경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음.

3.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전문대 물리치료과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4년제 학과 지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제58조의5 및 별표3 수정)

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경력없는 과정의 설치 기준을 경력있는 과정의 설치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제58조의3 및 별표 2, 3 수정)

- 1)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을 별표 2로 수정
- 2) 별표 2의 제목을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 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 으로 수정
- 3) 별표 3의 제목을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 (제58조의5제2항 관련)”으로 수정

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제58조의4제2항 단서 신설)

- 1)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이 2년 이상 과정에 대해서만 수업연한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 규정 신설

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규정 수정(제57조의2 수정)

- 1)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수업연한 단축을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변경

마.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요건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 완화(제58조의6 제4항제2호 수정)

1)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2년 이상으로 완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0. ~ 2025. 3.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58조의3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5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수업연한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8조의5의 제목 “(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을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58조의6제4항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58조의2제1항 관련)”을 “(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및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 (제58조의3제2항 및 제58조의5제2항 관련)”을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 (제58조의5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중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위심화 과정 및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을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8조의5 개정규정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은 물리치료사 양성과는 202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u>전문학사학위과정 : 동조제1</u> <u>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u> <u>4분의 1 이내로 한다.</u> 2. <u>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 동조</u>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u> <u>2분의 1 이내로 한다.</u>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 심화과정) ① (생 략)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u>별표 3</u> 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 심화과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별표 2</u> ----- --.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생 략) ②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 연한은 다음과 같다. <u><단서 신설></u>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 다만, 제1호의</u> <u>경우에는 수업연한의 4분의 1</u> <u>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u>

1. · 2. (생 략) ③ (생 략) 제58조의5(의료인 양성과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 운영 인가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5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관련 분야 재직경력(학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u>3년</u> 이상인 사람일 것 ⑤ · ⑥ (생 략)	<u>수 있다.</u>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5(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 운영 인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u>2년</u> ----- ⑤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20
	(044) 203 - 6418
	(044) 203 - 6422